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5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회계법인 바른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협회장 귀중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 감사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협회의 재무제표는 협회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법인을 청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협회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협회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회 계 법 인 바 른

대표이사  김 광 훈

2019년 2월 13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협회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재 무 제 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제 5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협회장 송 필 호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희망브리지

(전 화) 1544 9595

## 재 무 상 태 표

제 52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단위 : 원)

과 목	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I. 유동자산	54,370,063,426	52,444,825,561	1,925,237,865
(1) 당좌자산	51,259,562,940	49,334,325,075	1,925,237,865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15,939,520,421	15,751,238,368	188,282,053
2. 단기금융상품(주석3)	34,406,148,304	33,006,148,304	1,400,000,000
3. 미수금	271,494,413	256,877,589	14,616,824
4. 미수수익	226,085,530	-	226,085,530
5. 선급금	310,909,940	310,909,940	-
6. 선급비용	9,670,937	9,150,874	520,063
7. 미수법인세환급액	95,733,395	-	95,733,395
(2) 재고자산	3,110,500,486	3,110,500,486	-
1. 원재료	720,610	720,610	-
2. 구호물품(주석12)	2,767,774,001	2,767,774,001	-
3. 협회용구호물품(주석14)	262,520,389	262,520,389	-
4. 의연물품	36,683,051	36,683,051	-
5. 희망티	42,802,435	42,802,435	-
II. 비유동자산	13,088,325,544	13,328,058,904	4,558,723,853
(1) 투자자산	144,458,886	4,372,328,797	570,587,302
1. 장기금융상품(주석3)	134,910,362	134,910,362	-
2. 퇴직연금운영자산	9,548,524	8,938,006	610,518
3. 수익사업출연금	-	4,228,480,429	-
4. 목적회계	-	-	569,976,784
(2) 유형자산<주석4>	11,411,429,564	7,423,746,113	3,987,683,451
1. 토지	7,382,009,466	4,400,775,766	2,981,233,700
2. 건물	5,583,288,482	3,572,204,099	2,011,084,383

과 목	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감가상각누계액	(2,097,538,360)	(934,695,143)	(1,162,843,217)
3. 구축물	51,384,235	31,210,600	20,173,635
감가상각누계액	(51,372,235)	(31,202,600)	(20,169,635)
4. 기계장치	128,826,909	117,196,000	11,630,909
감가상각누계액	(128,817,909)	(117,189,000)	(11,628,909)
5. 차량운반구	804,263,060	804,263,060	-
감가상각누계액	(804,257,060)	(804,257,060)	-
6. 공기구	4,279,000	4,279,000	-
감가상각누계액	(4,277,000)	(4,277,000)	-
7. 비품	1,338,756,700	1,143,563,531	195,193,169
감가상각누계액	(796,530,435)	(758,839,630)	(37,690,805)
8. 시설물	109,487,272	5,860,000	103,627,272
감가상각누계액	(108,072,561)	(5,145,510)	(102,927,051)
(3) 무형자산	1,484,356,874	1,484,356,874	-
1. 소프트웨어	1,248,667	1,248,667	-
2. 사용수익기부자산	1,483,108,207	1,483,108,207	-
(4) 기타비유동자산	48,080,220	47,627,120	453,100
1. 보증금	48,080,220	47,627,120	453,100
자산총계	67,458,388,970	65,772,884,465	6,483,961,718
부채			
I. 유동부채	3,695,702,080	3,300,944,307	394,757,773
1. 미지급금	720,365,231	615,371,538	104,993,693
2. 선수금	2,662,761,909	2,662,464,909	297,000
3. 예수금	24,264,940	23,107,860	1,157,080
4. 임대보증금	288,310,000	-	288,310,000
II. 비유동부채	134,910,362	704,887,146	-
1. 장기미지급금	134,910,362	134,910,362	-
2.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7)	1,039,059,608	972,623,734	66,435,874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7)	(1,039,059,608)	(972,623,734)	(66,435,874)
3. 회관회계	-	569,976,784	-
부채총계	3,830,612,442	4,005,831,453	394,757,773

과 목	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순자산(주석8)			
I. 기본순자산	-	-	4,228,480,429
1. 시설잉여금	-	-	4,228,480,429
II. 보통순자산	63,627,776,528	61,767,053,012	1,860,723,516
적립금	3,551,906,546	3,551,906,546	-
잉여금	60,075,869,982	58,215,146,466	1,860,723,516
III. 순자산조정	-	-	-
순자산총계	63,627,776,528	61,767,053,012	6,089,203,945
부채와순자산총계	67,458,388,970	65,772,884,465	6,483,961,718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운 영 성 과 표

제 52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단위 : 원)

과 목	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사업수익	18,169,879,439	16,773,975,939	1,395,903,500
(1) 고유목적사업수익	16,773,975,939	16,773,975,939	-
1. 의연금수입(주석9)	11,857,892,904	11,857,892,904	-
2. 특별성금(주석9)	2,784,800,081	2,784,800,081	-
3. 긴급물품공급수입(주석13)	1,929,899,342	1,929,899,342	-
4. 기타수입(주석9)	201,383,612	201,383,612	-
(2) 수익사업수익	1,395,903,500	-	1,395,903,500
1. 임대료수입	405,000,000	-	405,000,000
2. 관리비수입	192,060,000	-	192,060,000
3. 주차수입	15,678,589	-	15,678,589
4. 이자수입	765,007,185	-	765,007,185
5. 희망티판매수입	18,157,726	-	18,157,726
II. 사업비용(주석10)	42,065,634,158	42,065,634,158	-
(1) 사업수행비용	41,507,347,706	41,507,347,706	-
1. 구호비(주석11)	36,984,250,000	36,984,250,000	-
2. 특별구호비(주석12)	1,560,885,220	1,560,885,220	-
3. 긴급물품공급원가(주석13)	2,346,756,868	2,346,756,868	-
4. 구호사업비	358,892,100	358,892,100	-
5. 구호물품사업비	2,919,100	2,919,100	-
6. 배분사업비	68,200,000	68,200,000	-
8. 구호품비(주석14)	185,444,418	185,444,418	-
(2) 모집비용	558,286,452	558,286,452	-
1. 모집사업비	146,663,325	146,663,325	-
2. 직접모집비	411,623,127	411,623,127	-
III. 일반관리비용	2,188,848,942	1,745,105,567	443,743,375
1. 급여(주석16)	1,119,452,325	1,008,254,759	111,197,566
2. 퇴직급여(주석16)	118,403,859	108,660,027	9,743,832
3. 복리후생비(주석16)	98,464,009	88,500,372	9,963,637
4. 여비교통비	49,809,610	49,336,110	473,500
5. 통신비	12,374,235	12,099,951	274,284
6. 수도광열비	53,766,253	-	53,766,253

과 목	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7. 세금과공과(주석16)	107,889,026	34,256,680	73,632,346
8. 감가상각비(주석16)	151,763,891	105,039,919	46,723,972
9. 보험료	13,229,973	11,458,685	1,771,288
10. 차량유지비	26,442,885	26,442,885	-
11. 교육훈련비	12,493,710	12,445,710	48,000
12. 인채제본비	49,138,325	49,032,545	105,780
13. 회의비	7,923,150	7,923,150	-
14. 소모품비	33,558,546	24,538,404	9,020,142
15. 도서신문대	1,571,320	1,540,900	30,420
16. 지급수수료	131,652,013	57,549,578	74,102,435
17. 수선비	43,669,352	732,700	42,936,652
18. 업무추진비	31,808,180	31,320,180	488,000
19. 행사비	2,680,450	2,680,450	-
20. 단체회비	800,000	800,000	-
21. 무형자산상각비	59,580,050	59,580,050	-
22. 조사연구비	29,741,496	29,741,496	-
23. 이사회관리비	10,446,700	10,446,700	-
24. 반환금	12,724,316	12,724,316	-
25. 희망티사업비	9,465,268	-	9,465,268
V. 사업이익(손실)	(26,084,603,661)	(27,036,763,786)	952,160,125
VI. 사업외수익	167,291,715	165,976,617	1,315,098
1. 유형자산처분이익	70,108,246	70,108,246	-
2. 전기오류수정이익	66,197,406	66,197,406	-
3. 반환금	1,828,791	1,828,791	-
4. 잡이익	29,157,272	27,842,174	1,315,098
VII. 사업외비용	29,725,548	29,725,535	13
1. 외환차손	30,014	30,014	-
2. 전기오류수정손실	101,700	101,700	-
3. 재고자산감모손실	26,226,621	26,226,621	-
4. 잡손실	3,367,213	3,367,200	13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25,947,037,494)	(26,900,512,704)	953,475,210
X. 법인세비용(주석15)	9,211,315	-	9,211,315
XI. 당 기 운 영 이 익(손실)	(25,956,248,809)	(26,900,512,704)	944,263,895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 주석

제 52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 1.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개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는 재해구호법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정부와 역할을 분담해 불시에 발생하는 재해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전국 언론사 대표들 등 사회 각계인사들이 뜻을 모아 1961년 7월 13일 발족한 '전국수해대책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1968년 10월 15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은 국민의연금품을 모집·관리·배분하고, 이재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 이재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수익사업은 상기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성 목적으로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 (1) 회계기준의 적용

협회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구호사업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과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적립 후 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여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 수익·비용의 인식

의연금수익, 구호비비용 등 목적사업 관련 수익과 비용은 해당 회계에서 금품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현금성자산

협회는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4) 금융자산

협회는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5) 재고자산의 평가

협회는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연품에 대하여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가 추정이 어렵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 의연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명	단위	전기이월	접수	지원	기말잔고
의 류	점	90,408	8,370	19,247	79,531
침구류	매	50,524	10,688	7,610	53,602
버 너	대	1,290	-	1,290	-
생필품	점	390,852	46,514	234,402	202,964
신발류	족	6	-	6	-
세제류	점	-	-	-	-
학용품	점	34,888	2,498	37,386	-
생 수	박스	-	19,224	16,014	3,210
식기류	점	10	-	-	10
식품류	박스	-	45,362	45,362	-

품명	단위	전기이월	접수	지원	기말잔고
의약품	점	-	-	-	-
백 미	박스	-	5,433	5,433	-
기 타	점	2,175	140,377	104,138	38,414
계		570,153	278,466	470,888	377,731

#### (6) 대손충당금

협회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수금등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7) 유가증권

협회는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각후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 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

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협회는 유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지출을 취득원가(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율법(건물, 구축물의 경우는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50년
시 설 물	15년
구 축 물	5년
기 계 장 치	4년
차 량 운 반 구	4년
공 구 와 기 구	5년
비 품	5년

(9)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협회는 무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중 소프트웨어는 5년,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 동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협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전액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설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11) 퇴직급여충당부채

협회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국민은행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사가 납부한 부담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2) 순자산

협회는 기부자(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을 포함)가 기부한 자산은 제시한 제약의 종류에 따라 영구적 제약이 있는 경우는 기본순자산, 기본재산의 일부가 보통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보통순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순자산 중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입하면 별도의 적립금, 제약이 없는 경우는 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13) 정부출연금

협회는 정부출연금 중 유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된 금액은 적립금으로, 운영비에 사용된 금액은 출연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법인세 등

협회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등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협회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14,905,068
	MMDA	941,302
	상품권	93,150
소 계		15,939,520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34,406,148
	소 계	34,406,148
장기금융상품	신탁자산	134,910
	소 계	134,910
합 계		50,480,578

4.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토지	7,382,009	-	-	-		7,382,009
건물	3,597,416	-	-	-	(111,666)	3,485,750
시설물	1,729	-	-	-	(314)	1,415

과 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구축물	12	-	-	-	-	12
기계장치	9	-	-	-	-	9
차량운반구	14,244	-	-	-	(14,238)	6
공구와기구	2	-	-	-	-	2
비품	38,174	533,248	-	-	(29,196)	542,226
합 계	11,033,595	533,248	-	-	(155,414)	11,411,429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 소	면적(m <sup>2</sup> )	금 액	
			장부가액	공시지가
회관부지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19	1,785	2,981,234	10,972,395
창고부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02-10 외	33,653	4,400,775	8,308,837
합 계		35,438	7,382,009	19,281,232

(3) 보험가입내역

협회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에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하여 부보금액 17,040 백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5.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무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79,498	(78,249)	-	1,249
사용수익기부자산	1,834,377	(351,269)	-	1,483,108
합 계	1,913,875	(429,518)	-	1,484,357

(2) 협회의 무형자산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기 초	증가	상각비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129	-	(880)	1,249
사용수익기부자산	1,541,808	-	(58,700)	1,483,108
합 계	1,543,937	-	(59,580)	1,484,357

사용수익기부자산은 함양물류센터의 건물로서 당 협회가 2004년에 2,300,250천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건설한 후 보건복지부에 기부채납하고 39.5년간 무상사용 수익하기로 하였는 바, 기부 당시 건물 투자비를 전액 비용처리하였으나 자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회계연도에 잔존 사용수익기간인 31.5년에 상당하는 1,834,377천원을 사용수익기부자산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상각비는 일반관리비로,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비는 사업비용(긴급물품공급원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 기
준비금전입액(수익사업)	127,649
준비금환입액(목적사업)	127,649

협회는 전기에 수익사업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7,649천원을 당기 중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전출(지출)하였고 동 전출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이익잉여금에 계상되었다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전액 환입처리되었습니다(주석 17참조).

## 7. 퇴직급여충당부채

협회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기 초	1,147,761
당기전입	127,881
당기지급	(236,582)
기 말	1,039,060
차감(퇴직연금운용자산)	(1,039,060)

## 8. 순자산의 변동

당기의 순자산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	3,551,907	86,032,119	-	-	3,551,907	84,260,067	-	-	-	1,772,052	-
기본순자산 증감	-	-	-	-	-	-	-	-	-	-	-	-
당기운영 이익	-	-	(25,956,249)	-	-	-	(26,900,513)	-	-	-	944,264	-
당기말	-	3,551,907	60,075,870	-	-	3,551,907	57,359,554	-	-	-	2,716,316	-

당기중에 법인세환급액 855,592천원을 기타사업부문에서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함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의 잉여금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9. 의연금 등 사업수익

협회의 의연금과 특별성금 및 기타수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b>I. 의연금</b>	
재해의연금(2017 지진)	146,629
재해의연금(2018 지진)	301,763
재해의연금(1.1~6.30)	18,945
재해의연금(7.1~12.31)	2,444,0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연금	8,446,5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연금(2017 호우피해 SK하이닉스 상품권)	500,000
I. 의연금 계	11,857,893
<b>II. 특별성금</b>	
제천다중이용시설화재피해	15,530
밀양 세종병원 화재피해	142,942
강원 고성 산불 피해	12,118
강원도 평창 지정기부	51,015
종로 고시원 화재	3,124
기업 지정기부금 등	2,281,112
참여형캠페인(희망티 등)	258,761
폭염 긴급구호 피해	18,259
기타	1,939
II. 특별성금 계	2,784,800
<b>III. 기타수입</b>	
정기후원금(지정기부금)	127,333
일시후원금	53,691
기타	20,360
III. 기타수입 계	201,384
합 계	14,844,077

## 10.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협회의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1. 공익목적사업비용	40,860,022	1,572,198	186,678	1,191,842	43,810,740
(1) 사업수행비용	40,836,055	327,107	9,867	334,319	41,507,348
구호비	36,984,250	-	-	-	36,984,250
특별구호비	1,473,456	14,806	-	72,623	1,560,885
긴급물품공급원가	2,346,757	-	-	-	2,346,757
구호사업비	31,592	124,191	9,867	193,242	358,892
구호물품사업비	-	2,665	-	254	2,919
배분사업비	-	-	-	68,200	68,200
구호품비	-	185,445	-	-	185,445
(2) 일반관리비용	-	1,217,861	176,811	350,433	1,745,105
(3) 모금비용	23,967	27,230	-	507,090	558,287
모집사업비	-	5,090	-	141,574	146,663
직접모집비	23,967	22,140	-	365,516	411,624
2. 기타사업비용	-	130,953	91,432	221,358	443,743
합계	40,860,022	1,703,151	278,110	1,413,200	44,254,483

## 11. 구호비

협회의 구호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7월호우 (17년)	포항지진 (17년)	6월 호우·태풍	8월 호우·태풍솔릭	10월 태풍콩레이	합계
서울	-	-	-	744,500	-	744,500
부산	-	-	1,000	-	31,500	32,500

구 분	7월호우 (17년)	포항지진 (17년)	6월 호우· 태풍	8월 호우· 태풍솔릭	10월 태풍콩레이	합 계
대구	-	-	-	-	10,000	10,000
인천	-	-	-	107,000	-	107,000
광주	-	-	-	12,000	-	12,000
대전	-	-	-	46,500	-	46,500
울산	-	-	2,000	500	6,500	9,000
경기	-	-	84,500	793,000	-	877,500
강원	-	-	-	27,000	20,000	47,000
충북	500,000	-	-	25,500	-	525,500
충남	-	-	34,500	3,500	-	38,000
전북	-	-	31,500	22,000	5,000	58,500
전남	-	-	155,000	60,500	-	215,500
경북	-	32,878,250	1,000	2,500	1,245,000	34,126,750
경남	-	-	8,000	11,000	115,000	134,000
제주	-	-	-	-	-	-
세종	-	-	-	-	-	-
합 계	500,000	32,878,250	317,500	1,855,500	1,433,000	36,984,250

## 12. 특별구호비

협회의 특별구호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BGF리테일 구호물품 지원사업	82,510
현대글로벌비스 안전공감 캠페인	5,846
현대글로벌비스 안전공감 캠페인_운송비	4,769
에너지 위기가정 지원	60,529
2017 KB손보 심신안정실	107,823
2018 KB손보 심신안정실	84,146
KT 구호키트 제작 및 지원	28,446

구 분	금 액
IBK기업은행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지원	25,200
현대백화점 화재예방시설 지원	9,900
희망브리지 봉사단 동절기 구호(연탄나눔)	8,823
kb국민은행 구호키트 제작	5,804
세월호 희생자 위로금 지원	114,840
제천 복합건물 화재피해 성금 지원	76,886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성금 지원	144,096
하이트진로 구호키트 제작 및 지원	125
LH 구호키트 제작 및 지원	27,429
코람코자산신탁 구호키트 제작 및 지원	9,582
고성 산불 피해 성금 지원	12,118
평창 주택침수 피해 성금 지원	56,278
IBK기업은행 쪽방촌 폭염 구호물품 지원	91,456
KB손보 화상피해자 지원	13,992
한화손보 화재피해자 지원	24,041
2017 cj오쇼핑	17,500
2018 cj오쇼핑	21,401
한화손보 희망하우스	701
방글라데시 문시간즈 정수시설 설치	25,017
우리훈우리요가 네팔 학교 건립 지원 사업	17,661
네팔 지진피해 복구지원 사업 (성금)	24,134
현대건설 후원 방글라데시 지원 사업	4,479
미얀마 타넛핀 정수시설 설치	6,275
파키스탄 가뭄피해지역 지원	73,529
롯데유통BU	118,432
온라인 모금 캠페인(미세먼지마스크)	9,990
기프트하우스	219,466
콩레이 피해 물품지원	440
주택도시보증공사 물품 지원	9,042
기타	18,179
합 계	1,560,885

### 13. 긴급물품공급원가

협회의 긴급물품공급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기초구호물품	3,208,597
구호물품매입	1,905,934
기말구호물품	(2,767,774)
긴급물품공급원가	2,346,757

긴급물품공급원가에 대응하는 긴급물품공급수입 1,929,899천원을 사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14. 구호품비

협회의 구호품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기초협회용구호물품	194,383
협회용구호물품매입(타계정대체제외)	167,259
전기오류수정이익(기업기탁물품)	15,669
기말협회용구호물품	(262,520)
구호품(협회용구호물품)	114,791
구호품(의연품사용)	70,653
구호품비 합계	185,444

### 15. 법인세 등

협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법인세율(지방소득세포함)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입니다.

16.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사항

협회의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금 액		
	목적사업	수익사업	합 계
급 여	1,228,511	111,198	1,339,708
퇴 직 급 여	133,538	9,744	143,282
복리후생비	111,849	9,964	121,812
감가상각비	108,689	46,724	155,413
세금과공과	47,358	73,632	120,990
합 계	1,629,945	251,261	1,881,206

1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 52(당) 기	
	처분예정일(2019년 2월 21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60,075,869,98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5,904,469,957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27,648,834	
4. 당기순이익	(25,956,248,809)	
II. 이익잉여금처분액		(894,759,077)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894,759,077)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9,181,110,905

18. 재무제표의 사실상 확정일과 승인기관

협회의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21일 총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예정입니다